은행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

제정 2024. 10. 29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모범규준은 은행(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)이 대체투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대체투자"란 주식, 채권 이외에 은행이 투자하는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자산(이하 "대체투자 자산"이라 한다)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 기업(특수목적기구 등을 포함한다)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체투자 자산 관련 국내 및 국외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부동산.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 개발 및 운용(임대 및 매매)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, 파생결합증권,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.
 - 나. 공항, 항만, 도로, 교량, 철도, 댐, 발전, 가스, 신재생에너지 등 사회기 반시설(이하 "SOC"라 한다). SOC에 대한 투자는 SOC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.
 - 다. 항공, 선박, 에너지자원, 귀금속, 농산물, 비철금속, 예술품 등 실물자산 (이하 "실물자산"이라 한다)으로서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.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실물자산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집합투자기구, 파생결합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를 의미한다.

- 라. 기업투자. 기업투자는 벤처·비상장기업, 기업공개(IPO),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, 기업구조조정·인수합병·경영참여를 위한 대출 및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(은행의 직접적인 주식 취득은 제외한다), 헷지펀드 투자, 기타 이에 준하는 투자를 의미한다.
- 마. 그 밖에 제1호 본문에 부합하는 투자자산
- 2. "집합투자기구"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뿐 아니라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(REITs),「여신전 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,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이와 유사한 국내외 기구를 포함한다.
- 3. "위험관리위원회"란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은행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.
- 4. "의사결정기구"란 대체투자 승인 업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체 심의·의결기구를 말한다.
- 5. "영업조직"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, 심사의뢰, 약정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.
- 6. "심사조직"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성 분석,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.
- 7. "사후관리조직"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,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 등과 같은 사후관리업무 또는 이를 위한 기준 마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.
- 8. "리스크관리조직"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익스포져 한도 검토, 통제 관리 및 감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.
- 9. "준법감시조직"이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모범규준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 등에 의한 투자 및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장 조직 및 리스크 관리체계

- 제4조(투자정보 관리)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을 세부 자산 구분, 변제순위, 만기분포, 투자지역 등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세분화한 투자정보를 전산화하여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해당 정보의 정합성을 매분기점검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절차의 적정성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 - 1. 자산 구분 : 제2조제1호 각 목의 자산에 대해 <별표> 자산 분류를 참고한 세부 분류
 - 2. 변제순위 :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, 지분, 기타 등
 - 3. 만기분포 : 잔여만기 1년 이내, 2년 이내, 3년 이내, 5년 이내, 10년 이내 및 10년 초과 등
 - 4. 투자지역 : 국가별 등
 - 5. 손실 우려 특이사항 : 부도 선언, 지속적인 이자·배당 중단 등
- 제5조(규정 및 관리체계) ① 은행은 대체투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및 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한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안,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대체투자 관련 영업조직을 심사조직, 사후관리조직,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등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은행의 규모, 대체투자 자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리 운영이 어려운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은행은 대체투자 의사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 족수 및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,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심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의 검토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 - ④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투자절차, 투자한도 및 자금 집행·관리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사고예방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하며,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⑤ 심사조직, 사후관리조직,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 관련 필요한 정보를 영업조직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있으며, 영업조직은 동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위험관리)** ① 은행은 안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와 관련된 각종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, 업무수행시 동 한도를 준수하도록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체투자자산별, 지역별 등 리스크 속성을 고려한 각종 분류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투자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 - ③ 은행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시 특정 운용사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한도 초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험관리위원회는 한도 초과를 승인한 사유, 승인 금액 등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한도 초과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등 필요한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⑤ 리스크관리조직은 정기적으로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위험관리위원회는 대체투자 한도 준수 여부 및 한도설정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⑥ 위험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투자한도 설정 관련 세부 업무, 제4항에 따른 한도 초과 승인 업무, 제5항에 따른 보고, 점검 및 확인 업무를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, 협의체 등에 위임할 수 있으며, 별도 위원회, 협의체 등에 위임하여 처리된 사항은 리스크관리조직에서 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자산건전성 관리) ① 은행은 유가증권을 통해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의 가 치변동 등과 관련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및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 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은행은 주기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자산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, 특히 수익증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지속적인 이자·배당 중단 등 연체 여부
- 2. 부도 발생 여부
- 3. 신용등급 (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손실률, 평 가손실의 지속기간, 자산의 손상여부 등 고려)
- 4. 고정이하 자산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및 공정가치 훼손 여부
- 5.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치의 지속적·유의적 하락 수준
- 6. 수익증권 기초자산의 부실화 여부
- 7. 기타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
- 제8조(성과보상체계) 은행은 임직원의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된 성과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대체투자 관련 성과, 비용 및 리스크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정할 것
 - 2.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할 것
 - 3. 거래별 시장위험, 신용위험 등 리스크 속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할 것
 - 4. 리스크관리조직 및 준법감시조직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영업조직 소속 임직원과는 달리 대체투자 성과가 보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 인 기준에 근거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것

제3장 심사 및 숭인관리

- 제9조(현지실사) ①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지조사 실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마련한 현지조사에 준하는 대체 절차 및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
 - 1. 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

- 2.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,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·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
- 3. 기타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의사결정기구가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체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가 적합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, 대체 절차 및 그 결과를 내부 검토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블라인드 펀드 및 위탁운용의 경우, 외부 운용사의 운용인력, 운용절차 및 성과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.
- 1. 운용인력 : 대체투자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경험
- 2. 운용절차 : 대체투자 펀드의 운용조직, 투자 및 리스크관리절차, 적절한 운용시스템의 사용 및 손실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
- 3. 성과 : 펀드평가방식(공정가액 반영방법) 및 운용 실적, 운용자산 규모
- 제10조(계약조건 검토) 은행은 대체투자와 관련한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를 이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기관의 감정평가, 법률자문 등이 필요한 대상·요건 등을 포함한 내부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심사 및 숭인) ①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사업성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함에 있어 영업조직, 심사조직, 리스크관리조직,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, 투자심사 및 숭인절차 와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특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여부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,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사정에 정통한 외부전문가(시장조사기관, 신용평가기관, 감정평가법인, 투자전문기관 등)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심사조직은 거래참여자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 관련 기초자료의 진위 여부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의 성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.

- ④ 은행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1. 투자심사체계 및 심사평가기준의 적정성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
- 2. 기존 투자자산의 갱신, 만기연장, 중도환매 및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심사 등 의사결정 절차
- ⑤ 의사결정기구는 심사조직,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⑥ 은행은 고위험 및 새로운 유형의 투자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.

제4장 사후관리

- **제12조(사후관리)** ① 은행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,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차질 없는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자금 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은행은 리스크관리조직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체투자 승인 이후 시장상황 변동, 사업 지체·불이행,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변동 등 자금회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, 주요 이벤트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시 투자 방법, 투자자산의 특성 및 투자심사시 확인한 리스크요인 등 자산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⑤ 은행은 대체투자 자산의 사후관리·모니터링 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위험 관리위원회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산의 중대한 조건변경,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할 수 있 도록 업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⑥ 은행은 대체투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책임조사, 부실화 원인분석, 재발방지 방안마련 등을 위한 사후관리 절차·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위기상황 분석) ① 은행은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 관련 주요 대내외 지표 등이 대체투자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은행 자본적정성,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등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한편, 은행 리스크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은행은 대체투자 관련 위기상황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익스포 져 관련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단계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) 이 모범규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.

부 칙(2024. 10. 29.)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모범규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내규의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 대체투자 기초자산 및 투자 분류표

기초자산 (국외자산) 구분		투자 구분
❶ 부동산	주거용	 ▶개발 및 운용(임대·매매)에 대한 직접 대출 ▶집합투자기구, 파생결합증권, 유동화 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등
	상업용(오피스, 상가, 호텔, 물류· 창고, 복합시설, 기타)	
	기타·복합	
2 SOC	공항.항만	►개발 및 운용에 대한 직접 대출 ►집합투자기구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등
	발전·에너지	
	도로·교량·철도	
	기타·복합	
❸ 실물자산	항공기·선박	▶실물자산에 대한 직접 대출 ▶집합투자기구, 파생결합증권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등
	미술품.골동품	
	기타·복합	
4 기업투자	벤처·비상장·IPO·투기등급	▶집합투자기구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등
	구조조정·인수합병·경영참여(PEF)	
	기타절대수익전략(헷지펀드)	
	기타·복합	
⑤ 기타자산	1~4 외의 대체투자 자산	► 직접 대출 ► 집합투자기구 및 기타 유가증권을 통한 투자 등